

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(경미한사항)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43호(2023.06.15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(돈의문2구역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-73호(2024.06.21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-71호(2025.05.2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우리 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(경미한사항)를 처리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19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대
 - 면 적 : 6,835.7㎡(대지 5,883.7㎡, 정비기반시설 952.0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지엘돈의문디앤씨주식회사 대표 황세훈
 - 주 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96, 2912호(논현동, 푸르지오시티)
4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(경미한사항)일: 2025.12.19.
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(경미한사항)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층)	높이 (m)	용 도	건축연면적 (㎡)
5,883.7	3,507.01	59.61	69,909.80	749.24	지하6층/ 지상21층	70	공동주택	36,056.39
							상가(근생)	4,642.65
							업무시설	26,869.47
							기부채납	2,341.29
							총계	69,909.80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계(연면적,㎡)	토지등소유자(㎡)	체비지(일반분양,㎡)	임대주택(㎡)	보류시설(㎡)	기부채납(㎡)
69,909.80	33,480.03	21,898.21	11,558.73	631.54	2,341.29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변경없음

6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☎02-2148-2676). 끝.